

분 묘 개 장 공 고 (2차)

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사업부지에 편입된 추가 분묘에 대하여 『장사 등에 관한법률』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
1. 분묘의 소재지 :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일원

○ 편입토지 지번

| 소 재 지 | 지 번 | 기 수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| 산14-1, 산15-1 | 1 |

2. 개장 대상 분묘기수 : 무연분묘 1기

3. 개장사유 :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내 편입

4. 공고기간 : 최초공고일로부터 30일 간

5. 개장방법 : ㉠ 유연분묘 :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(이장비 지급)

㉡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

6. 개장 후 안치장소 : 포항 및 경북 소재 납골당(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)

- 안치기간 : 안치일로부터 10년

- 안치방법 : 화장 후 납골당 안치

7. 신고장소 :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(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☎061-338-6156)

8. 신고요령 : 연고자(신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(사망자)와의 관계 증빙서류(족보,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9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17년 6 월 14 일

사 업 시 행 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보상업무수탁자 : 한국농어촌공사 사장